

의안번호	2216024
의 퇴 인	서천호 의원
회 답 일	2026. 1. 5.
추계번호	25E6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영림·벌목업에 대한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임산물 채취업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11.2억원, 2031년 20.0억원 등 5년간 총 94.8억원(연평균 1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임업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안 제12조제2호)	-11.2	-21.8	-21.2	-20.6	-20.0	-94.8	-19.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 임업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현행)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의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 3,000만원 ¹⁾ 을 한도로 비과세 － (개정안) ① 영림·벌목업의 조림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비과세 한도를 소득 전액으로 확대 ② 임산물 채취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연 10억원 한도)													
		<table><tr><th rowspan="2">업종 구분</th><th colspan="2">비과세 한도</th></tr><tr><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영림·벌목업</td><td>연 3,000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td><td>전액 비과세 (조림기간 요건 삭제)</td></tr><tr><td>임산물 채취업</td><td>－</td><td>연 10억원</td></tr></table>		업종 구분	비과세 한도		현행	개정안	영림·벌목업	연 3,000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	전액 비과세 (조림기간 요건 삭제)	임산물 채취업	－	연 10억원	
		업종 구분	비과세 한도												
			현행	개정안											
영림·벌목업	연 3,000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	전액 비과세 (조림기간 요건 삭제)													
임산물 채취업	－	연 10억원													

1) 「소득세법」 개정(2025.12.23., 법률 제21221호)에 따라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조제2호(비과세소득)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함
 - 2026년 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 2025년 세법개정으로 영림·벌목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 추계에서는 현행(비과세 한도 3,000만원)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제시
 - 추계에 활용한 국세청 자료(2024년 귀속)는 종전 비과세 한도(600만원)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이므로 세수효과 추계 시 비과세 한도 상향분(2,400만원)을 고려하여 계산
-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임업 관련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임업 관련 세부업종별(영림업·벌목업·임산물 채취업)로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받아, 1인당 평균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세 감소액을 추정한 이후 신고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효과 추정
 - － 영림업(업종코드 020100, 020101) 및 벌목업(020102)의 경우, 사업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자료를 제공받아 소득구간별로 추정
 - － 임산물 채취업(업종코드 020102)의 경우, 신고금액이 소액으로 신고인원이 많지 않아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전체 구간을 바탕으로 추정

- 최근 5년간(2020~2024년)의 평균 임업소득²⁾ 연평균 증감률(△2.9%)에 따라 소득세 감면액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 동 추계는 비과세 확대에 따른 개인의 행태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발생하는 임업소득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 「소득세법」 상 임업 관련 소득 비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도입 취지: 산림 경영 장려 및 임업인의 소득보전 등
- 대상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한도: 연간 3,000만원 (2025년까지는 연간 600만원)

(2) 추계 방법

□ (영림업) 2024년 귀속 기준, 영림업 사업소득은 97.7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삭제될 경우 10.5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표 3] 영림업 관련 소득 비과세 확대에 따른 감면액 추정: 2024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소득 규모	신고 건수	사업 소득금액	1인당 평균 소득금액	조정된 1인당 평균 소득금액 ¹⁾	실효세율 ²⁾	1인당 소득세	비과세 시 세수 감소액
	A	B	C = B / A	D = C - 1.4	E	F = D × E	A × F
1천만원 이하	202	841	4	0.0	1.4%	0.0	0.0
2천만원 이하	65	987	15	0.0	2.1%	0.0	0.0
3천만원 이하	45	1,122	25	0.9	3.1%	0.0	1.3
4천만원 이하	23	783	34	10.0	4.0%	0.4	9.3
6천만원 이하	16	789	49	25.3	6.8%	1.7	27.6
8천만원 이하	17	1,232	72	48.5	9.1%	4.4	75.1
1억원 이하	11	1,011	92	67.9	11.3%	7.7	84.7
1억원 초과	21	3,933	187	163.3	24.9%	40.6	853.0
합계	459	9,771					1,051

주: 1) 비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 조정된 효과를 조정

2) 2024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임

1.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은 비과세된 금액은 제외한 소득으로,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삭제될 경우 해당 소득은 모두 비과세로 전환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임가경제통계」, 산림청

□ (별목업) 2024년 귀속 기준, 별목업 사업소득은 176.5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삭제될 경우 12.9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표 3] 별목업 관련 소득 비과세 확대에 따른 감면액 추정: 2024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소득 규모	신고 건수	사업 소득금액	1인당 평균 소득금액	조정된 1인당 평균 소득금액 ¹⁾	실효세율 ²⁾	1인당 소득세	비과세 시 세수 감소액
	A	B	C = B / A	D = C - 1.4	E	F = D × E	A × F
1천만원 이하	234	1,271	5	0.0	1.4%	0.0	0.0
2천만원 이하	156	2,250	14	0.0	2.1%	0.0	0.0
3천만원 이하	86	2,129	25	0.8	3.1%	0.0	2.0
4천만원 이하	49	1,684	34	10.4	4.0%	0.4	20.6
6천만원 이하	68	3,260	48	23.9	6.8%	1.6	111.0
8천만원 이하	30	2,126	71	46.9	9.1%	4.3	128.1
1억원 이하	12	1,089	91	66.8	11.3%	7.6	90.8
1억원 초과	29	4,473	154	130.2	24.9%	32.4	939.5
합계	695	17,654					1,292

주: 1) 비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 조정된 효과를 조정
 2) 2024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임
 1.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은 비과세된 금액은 제외한 소득으로,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삭제될 경우 해당 소득은 모두 비과세로 전환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산물 채취업) 2024년 귀속 기준, 임산물 채취업 사업소득은 3.2억원으로 비과세가 신설될 경우 약 0.4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표 3] 임산물 채취업 관련 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액 추정: 2024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신고건수	사업소득금액	1인당 평균 소득금액	실효세율 ¹⁾	1인당 소득세	비과세 시 세수 감소액
	A	B	C = B / A	D	E = C × D	A × E
임산물 채취업	47	323	6.9	13.6%	0.9	43.9

주: 1) 2024년 귀속 기준 전체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임
 1.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될 경우, 대상 소득이 모두 비과세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업 관련 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액이 연간 2.9%씩 감소할 것을 전제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임가경제통계」(산림청) 2020~2024년 연평균 임업소득 증감률: △2.9%

(3) 추계결과

- 영림·벌목업에 대한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임산물 채취업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11.2억원, 2031년 20.0억원 등 5년간 총 94.8억원(연평균 1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임업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안 제12조제2호)	-11.2	-21.8	-21.2	-20.6	-20.0	-94.8	-19.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